

불 임

【해외공사 수행절차 및 제반 보고사항 안내】

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(해외건설업의 신고)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필해야 하며, 동 법 제13조(해외공사 상황보고)에 따라 제반 보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 아울러 해외건설업 영위를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(인수)하는 경우, 동 법 제10조(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)에 따라 그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.

국내외 건설업체로부터의 하도급 형태의 해외공사도 마찬가지로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할 경우 동 법 제41조(과태료)에 의거 과태료(300만원 이하)가 부과됩니다. 또한, 이러한 제반 보고를 생략하는 경우 해외건설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.

해외공사 수행단계	신고 및 보고사항	준수내용
공사정보 입수 및 수주활동	수주활동상황보고	도급공사: 입찰예정일 10일전까지 개발형공사: 공사 시행개시일 20일전까지
	현지법인 설립 신고	설립(인수)일로부터 60일 이내
계약체결	계약체결결과보고	계약체결 후 15일 이내
착공 및 시공	시공상황보고	매 반기 종료후 30일 이내
	해외공사 실적 보고	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
공사내용 변경 및 제반사고보고	공사내용변경보고 / 제반사고보고	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
준공	준공보고	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

현재 해외건설업 신고, 현지법인 설립(인수) 신고, 해외공사 상황보고 등 해외공사 수행에 따른 제반 신고 및 보고 처리업무는 해외건설협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2010. 12. 20부터 '해외건설e정보시스템(yes.icak.or.kr)' 사이트를 통해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.

※ 관련 신고 및 보고사항 접수처(해외건설협회)

- 해외건설업 신고
 - 기획홍보실 박지영 사원(T.02-3406-1057)

- 현지법인 설립(인수) 신고
 - 사업관리실 이경지 사원(T.02-3406-1082)

- 해외공사 상황보고(수주활동, 계약체결, 시공상황, 공사내용 변경 등)
 - 사업관리실 담당자(지역별)
 - 시공상황보고 : 사업관리실 김성진 과장(T.02-3406-1108)



해외건설협회

International Contractors
Association of Korea